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등 〉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39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신설 등(안 제2조 등)	3
※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재정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7. 24.

다. 회 부 일 : 2026. 7.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의 지역서점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인증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검·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서점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인증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신설 등(안 제2조 등)

개정안은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재인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립·학교도서관이 간행물 구매 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 협동조합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지자체별 해당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고,

지역서점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관련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지역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시설 중 제7조의 3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점을 말한다.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

현행	개정안
<u>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1. <u>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u>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u>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u>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u> ② ~ ④ (생략) ⑤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u> ⑥ (생략) <u><신설></u>	<u>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⑥ (현행과 같음) <u>제7조의3(지역서점 등의 인증) ①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도 이와 같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u>

현행	개정안
<신설>	는 인증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서점 가.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라. 그 밖에 운영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는 것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 신고된 협동조합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지역서점협동조합 ③ 제2항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지역서점 등의 인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④ 인증취소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간행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

현행	개정안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에게</u>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른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 실적을 4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 ----- ----- -----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u>----- -----.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은 지역서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지역서점 인정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어 지역별로 지역서점의 인정요건이 상이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 이용을 독려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동 조항에 따라 지역 도서관의 지역서점으로부터의 도서 구매 및 이로 인한 지역서점의 활성화가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구매 입찰에 실제로는 부동산·타이어 판매 등 다른 업종을 주로 영위함에도 사업자 등록증 상으로만 업종을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한 이른바 “유령회사³⁾”가 낙찰을 받아,

실제 지역서점이 공공납품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⁴⁾하고 있는 상황임.

1) 「출판문화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2) 「출판문화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3) 출판유통업계에서 다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계약 낙찰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업체를 지칭하는 표현. 출처: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p.3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3.

4)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p.38-39, p.92-93 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3.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유령회사 문제의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요건으로 지역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해주는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기준이 상이하여 “지역서점” 관련 실제 정책적 운용 환경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상황임.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현황]

구 분	조례형태로 운영	공고 형태로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군산시, 나주시, 당진시, 목포시, 안양시, 여주시, 전주시, 진천군, 청주시, 평택시, 화성시, 익산시, 구미시	포항시, 완주군, 순천시, 공주시, 창원시, 광양시
합계	22개 지자체	7개 지자체
	29개 지자체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가공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서점 인증 요건 차이(예시)]

구 분	경기도	강원도	서울시 성북구	대전시
오프라인 매장 필요여부	필 요			
주 업종이 도서판매업				
지자체에서의 영업기간	1년 이상			6개월 이상
매장면적기준	(관련 규정 없음)		- 바닥면적 50% 이상 순수도서 구비	- 바닥 최소면적: 19.8m ² - 서적전시·판매 면적 50% 이상
매출 증빙자료	최근 3개월 월별 자료 또는 최근 1개월 일별 자료 * 인증공고에서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최근 6개월 월별 자료 *관리지침에서 규정

※ 자료: 각 지자체 지역서점 활성화·지원 관련 조례 등에서 발췌

이에 공공도서관 측에서는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한 기관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⁵⁾하고 있음.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지역별로 일부만 운용되거나 달리 운용되던 지역서점 요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에 있어 실제 지역서점 여부에 대한 구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5)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p.80-81(공공도서관 의견), p.94-95(지역서점 의견) 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3.
「최휘영 "진짜 동네책방이 도서관 납품해야...학교도서관 마크비도 정상화"」, 파이낸셜 뉴스, 2026.5.1.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도서 조달 우선계약 대상으로 지역서점 뿐만 아니라 지역서점협동조합도 규정⁶⁾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합에 대한 인증도 실시함으로써, 실제 지역서점협동조합에 대한 검증력을 제고하고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특히,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와 관련하여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 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⁷⁾하고 있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⁸⁾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에 대한 인증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6) 경기도, 서울시 서대문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 자료: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p.22-2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3.

7) 「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2020.3.16.

「공공·학교 도서관, 도서 구매할 때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해주세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6.7.1.

8) 「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2020.3.16.

첫째, 지역서점의 인증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함.

유통회사가 아닌 지역서점을 선별해내기 위해서는 지역서점 인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나, 지나치게 많은 입증자료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 영세업체에 해당하는 지역서점⁹⁾이 지역서점 인증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인증제도 운용 필요성과 현실적 운용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인증요건 및 절차를 설계해야 할 것임.

둘째,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용하던 “지역서점 인증제” 요건과의 정합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서점 인증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의 영업기간, 매장면적기준 및 매출증빙

9) [연 매출별 지역서점 비중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1억원 미만	42.9%	47.2%	49.5%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3.3%	28.6%	27.5%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9.8%	19.2%	18.5%
10억원 이상~20억 미만	4%	3.1%	2.9%
20억 이상	-	1.9%	1.7%
합 계	100%	100%	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 인증 세부요건을 달리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역서점 인증을 위한 세부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서점 인증”이라는 동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지자체별로 상이한 인증요건을 최대한 많이 포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계해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받은 지역서점이 개정안에 따른 인증 제도 하에서 배제되거나, 재인증 또는 중복인증을 받아야 하는 일선현장에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도서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새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며 해당 인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인정해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도

록 해당 부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

- (개념) 일정 요건을 갖춘 해당 지역 내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및 홍보·경영, 시설개선·문화활동 지원 등 서점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제도
- (도입현황)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공고 등 형태로 29개 지자체 도입

구분	조례 · 공고명
광역 (9)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기초 (20)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지역서점 인증제 안내 공고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공고
	순천시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공고
	공주시 지역서점 인증제 모집 공고
	창원시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공고
	광양시 지역서점 인증제 안내 공고